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5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7,604,338,963	228,130,169
일 반 회 계		6,261,540,002	187,846,200
특 별 회 계		1,342,798,961	40,283,969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54,300,891	10,629,027
	① 상 수 도 사 업	145,184,805	4,355,544
	② 하 수 도 사 업	209,116,086	6,273,483
	기 타 특 별 회 계	988,498,070	29,654,942
	① 의 료 급 여 기 금	393,435,049	11,803,051
	② 수 질 개 선	2,859,456	85,784
	③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	125,570	3,767
	④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3,839,989	115,200
	⑤ 택 지 개 발 사 업	34,280	1,028
	⑥ 교 통 사 업	23,851,533	715,546
	⑦ 광 역 교 통 시 설	18,160,142	544,804
	⑧ 학 교 용 지 부 담 금	4,194,984	125,850
	⑨ 산 업 단 지	1,606,789	48,204
	⑩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74,761,668	2,242,850
	⑪ 도 시 철 도 사 업	248,104,729	7,443,142
	⑫ 소 방	217,523,881	6,525,716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29,456,580천원” 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444,300,000천원 (고금리지방채차환 154,800,000천원 포함)” 으로 한다.

제8조 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